의 안 번 호	제 200 호
의 결	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최 경 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5월 31일

##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경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0 발의연월일: 2019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최경천, 박상돈, 박형용,

심기보, 육미선, 이상욱,

송미애

#### 1. 제안이유

○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,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 하여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등 명칭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)

- "법무통계담당관" → "법무혁신담당관"
- "법무통계담당관실" → "법무혁신담당관실"

나.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 다. 용어 정비 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- "타업무" → "다른 업무" / "문의" → "상담"
- "즉석 답변"→ "현장 답변"/ "실과" → "부서"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등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
다. 협 의 :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

라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####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도 법무통계담당관실"을 "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법무 혁신담당관실"로 한다.

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"시군"을 각각 "시·군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상담실운영은 도지사"를 "상담실 운영은 충청북도지사"로, "법무통계담당관 책임하에"를 "법무혁신담당관 책임 하에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법무통계담당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실"을 "법무혁신담당관 또는 법무혁신담당관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시, 군 또는 읍, 면, 동에 일정기간 파견,"을 "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에 일정기간 파견하여"로 한다.

제7조 중 "법무통계담당관"을 "법무혁신담당관"으로, "해당실과 담당사무관"을 "해당 부서 업무담당사무관"으로, "상담시"를 "상담 시"로, "임석요청시 타업무"를 "임석 요청 시 다른 업무"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"면담은 가능한한 즉석 답변"을 "상담 시 면담은 현장 답변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즉석"을 "현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문의는"을 "상담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전화문의는"을 "전화상 담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관련시군"을 "관련 시·군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도고문변호사"를 "도 고문변호사"로 한다.

제11조 중 "관계실과간"을 "관계 부서 간"으로 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상담실운영"을 "상담실 운영"으로, "기록유지"를 "기록 유지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)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 실(이하 "상담실"이라 한다)은 <u>도</u> <u>법무통계담당관실</u> 에 둔다.	제2조(설치)
제3조(상담범위) 상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상담범위) 
<ol> <li>도 및 <u>시군</u>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</li> </ol>	1 <u>시·군</u>
2. 도 및 <u>시군</u> 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	2 <u>시·군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운영) ① <u>상</u> 담실운영은 도지 <u>사</u> 의 명을 받아 <u>법무통계담당관</u> <u>책임하에</u> 운영한다. ② (생 략)	제4조(운영) ① <u>상담실 운영은 충청</u> 북도지사 법무혁신담당관 책 임 하에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상담관) ① 상담관은 <u>법무통</u> <u>계담당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실</u>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, 상담업무 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 원을 배치한다. ② (생 략)	제6조(상담관) ① <u>법무혁신</u> 담당관 또는 법무혁신담당관실
	I.

③ 상담관은 상담요원에게 연구분 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, 군 또는 읍, 면, 동에 일정기간 파견,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. ④ (생 략)	③          시·군 또는 읍·         면·동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     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임석) <u>법무통계담당관</u> 은 필요한 경우 <u>해당실과 담당사무관</u> 또는 실무자를 <u>상담시</u> 임석시킬 수있으며, <u>임석요청시 타업무</u> 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	제7조(임석) <u>법무혁신담당관 상</u> <u>해당 부서 업무담당사무관 상</u> <u>담 시 임석 요청 시</u> <u>다른 업무</u> .
제8조(상담처리)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.	제8조(상담처리) ① <u>상담 시 면담은</u> <u>현장 현장 -</u> 
② 서면 또는 인터넷 <u>문의는</u> 상담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.	② <u>상담은</u> 
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 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, 관련시군에 통지한다.	③ <u>전화상담은</u>  ④ <u>관</u> 런 시·군

제10조(자문)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	제10조(자문) ①
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	<u>도 고문변호사</u>
을 때는 <u>도고문변호사</u> 의 자문을	
받는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운영위원회) 상담실과 도 관	제11조(운영위원회) 관계 부서
계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	간
착오없는 상담으로 도정의 신뢰도	
를 높이며,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	
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	
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	
제12조(기록유지) 상담관은 <u>상담실</u>	제12조(기록유지) <u>상담실</u> 운
<u>운영</u> 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	<u>영 기록 유지</u>
비치하고 <u>기록유지</u> 하여야 한다.	<b></b> .

## 관계법령 등 발췌

#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- ③ ~ ⑥ 생략

##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<u>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</u> <u>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</u>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## 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

- 제7조(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)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, 예산 담당관, 세정담당관, 청년정책담당관, **법무혁신담당**관을 둔다.<개정 2018.10.1.>
  - ② 기획관리실장은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,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, 예산담당관·세정담당관·청년정책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8.10.1.>